

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노인장애인복지과)

제출일 : 2026. 7.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상 시설종류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개정됨에 따라 「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명칭 및 법문 용어 정비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문 용어 변경(“보호” → “이용”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“장애인 주간보호시설”에서 “장애인 주간이용시설”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임.
-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상 “보호시설”을 “이용시설”로 변경하고,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 등 관련 규정을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등 관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

임.

- 검토 결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